

서울고등법원 2019. 8. 13 선고 2018나2039455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8. 13 선고 2018나20394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539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성국, 배성진

피고, 피항소인 D 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이응진, 김재구

변론 종결 2019. 6. 20.

판결 선고 2019. 8.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5396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536,000,000원, 원고 B에게 630,000,000원, 원고 C에게 4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항소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취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임원'에 원고들(특히 원고 A)을 포함하기로 하는 분명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들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2016년 연간 총액 15억 원을 초과하는 보수 등을 지급하여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항 및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서 '연간 총액 15억 원을 초과하는 임원(비등기임원 포함)의 보수 또는 성과금 지급'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정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주주인 원고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의 보수 또는 성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이 위 '임원의 보수 또는 성과금'에 포함되는지 살펴본다.

2) 피고의 이 사건 조항 위반 여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실시하고 있는 사정들과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2, 3, 5, 6,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Y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조항에 정해진 '임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종결 이후 피고가 임원에 대한 보수 등의 명목으로 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의도적으로 EBITDA2)를 낮게 함으로써 잔여주식의 인수가격을 부당하게 낮추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2016년 원고들에게 지급된 돈 510,990,000원(원고 A 220,010,000원, 원고 C 247,502,000원, 원고 B 43,478,000원)을 제외하면 대상회사의 실질적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 등 합계액은 1,101,146,620원(1,612,136,620원 - 510,990,000원)인바, 이는 대상회사가 2015년 당시(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연도이다)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 등의 합계액 1,225,588,800원보다 적다. 게다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종결 이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I은 보수 등으로 원고 A, C의 예년 보수(2015년 각 220,000,000원, 226,485,000원)보다 훨씬 적은 145,516,610원을 받았는바, 피고가 임의로 임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의 규정형식은 기존보다 다소 여유롭게 임원 보수 등의 한도액을 정하고 그 금액까지는 피고가 추가로 임원들을 자유롭게 선임하되,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하기로 한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Y의 일부 증언 참조3)). 그런데 원고들까지 모두 이 사건 조항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하면 피고는 기존에 원고들이 임원들에게 지급하던 보수 등 총액보다 낮은 한도에서 임원 등 보수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조항의 규정형식 및 이 사건

대상회사의 인수 경위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고는 대상회사의 등기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2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3항 참조).

나) 원고 A은 2015. 12. 31.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3항에 따라 회장의 직함과 예우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대상회사의 직급체계에 따르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부사장, 전무, 상무, 전문위원, 상무보(2016. 7. 11. 이전에는 이사)'가 있을 뿐 회장은 그 직급체계 내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대상회사의 2016. 12. 29.자 조직도(갑 제20호증)나 대상회사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2016. 11. 및 2017. 3.경의 각 엑셀문서(갑 제6, 7호증)는 원고 A이 임원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대상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기재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임원'에 원고 A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또는 성과금'에 관한 것인데, 원고 A에게 지급된 돈은 '예우'의 차원에서 지급된 것인바, 이를 보수 또는 성과금과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다분하다.

즉,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종결 이후 관계사와의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등 대상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갑 제29 내지 32호증 등), 이는 종전 경영진으로서 일부 조언자의 역할을 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 A이 대상회사 내부의 결재 등 경영업무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원고 A이 대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3항의 '예우'를 넘어 업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원고 A이 대상회사의 이사 1인을 지명할 권한(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항)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경영참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는 원고 A이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인 것으로 보일 뿐 대상회사의 임원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마) 원고 B은 2015. 12. 20. Z(피고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원고 A의 체면을 고려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권한 없이 대표이사 직함은 유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메일 및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전 AA은 대상회사를 부정비리협력사로 지정하여 대상회사와의 거래를 단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기존 경영진인 원고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주간계약 협상 과정에서 원고들의 경영참여 조항이 대부분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대상회사에 대한 경영참여를 원하는 원고들의 제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양우

판사성충용

판사최현중

- 1)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 2) 일반기업회계기준(또는 K-IFRS)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현금흐름표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2017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승인된 경우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잔여주식 31,920주를 매수하여야 한다. 그 매매가격은 대상회사의 2016년 및 2017년 재무제표상 EBITDA 합계를 잔여주식 수로 나눈 액수로 계산되므로, EBITDA가 낮아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결과가 되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 대상회사의 2016년 및 2017년 재무제표(갑 제4호증의 2, 을 제17호증)에 의하면, 그 가격은 198,478원으로 계산된다.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3.1항(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같은 계약 제9.3의 (a)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잔여주식 31,920주를 당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같이 1주당 875,000원에 매수하여야 한다.
- 3) 다만, 증인 Y는 "원고 A, C이 이 사건 조항의 '임원'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당연한 전제였고, 협상 당시 피고 측 L이 이를 언급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증인 Y와 원고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증언은 믿지 않는다.